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4후11606 등록무효(디) (다) 상고기각
제목	디자인의 공동창작 여부가 문제 된 사건	
판시사항	디자인의 공동창작자를 판단하는 기준	
판결이유	구 디자인보호법(2023. 6. 20. 법률 제194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현행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하 통틀어 '형태'라 한다)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3조 제1항(현행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하는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시각을 통한 미감을 일으키는 디자인의 창작행위를 한 사람을 가리킨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2후10401 판결 등 참조). 구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2항(현행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 말하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경우'에 해당하려면, 2명 이상이 시각을 통한 미감을 일으키는 디자인의 창작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한 관계에 있어야 한다. 단순히 디자인 창작에 관한 기본적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거나, 디자이너를 일반적으로 관리하거나, 디자이너의 지시에 따라 디자인 창작을 보조하지만 하거나 또는 디자인 창작을 후원·위탁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스케치, 모형 제작, 시안 검토 등을 통하여 그 새로운 착상을 디자인으로 구체화하거나, 미감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 형태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 등을 통하여 디자인의 창작을 가능하게 하는 등으로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에 그 디자인의 '공동창작자'라고 할 수 있다.	

(1) 본 판례의 의의 및 취지

- 구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2항(현행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 말하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한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판결.
-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은 **시각을 통한 미감을 일으키는 디자인의 창작행위를 한 사람**이라는 기존 법리를 전제로, 공동창작자가 되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이 시각을 통한 미감을 일으키는 디자인의 창작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한 관계에 있어야 한다**고 판시함.
- 단순히 디자인 창작에 관한 기본적 과제나 아이디어를 제공한 경우 등과 구별하여, **구체적인 착상의 제시·부가·보완, 디자인으로의 구체화, 미감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 형태의 제공, 구체적인 조언·지도 등을 통하여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 공동창작자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공동창작 디자인에 대하여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출원하지 않은 경우 **공동출원에 관한 구 디자인보호법 제39조 위반에 따른 등록무효사유가 인정됨**을 확인함.

(2) 사안개요

1. 사건의 당사자 및 청구

- 원고들: 주식회사 ○○○코리아 외 1인.
- 원고보조참가인: △△전자 주식회사.
- 피고들: 피고 1 외 1인.
- 원심: 특허법원 2024. 11. 21. 선고 2023허12268 판결.
- 원고들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공동창작자의 공동출원에 관한 구 디자인보호법 제39조를 위반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다툼.

2. 이 사건 등록디자인

- 대상물품: '휴대폰 보호필름 부착장치용 가압 롤러'
- 등록디자인의 주요 형태:
 - **몸체부 하단 2종 롤러 형태**
 - 평롤러: 원기둥 형상.
 - 입체롤러: 아령처럼 양쪽 끝 부분이 두껍고 가운데 부분이 얇은 형태.

- 입체롤러 2단 단차 형태
 - 입체롤러의 굽기가 2번 변하는 2단 단차 형태.
- 몸체부 측면 함몰부 형태
 - 몸체부 측면 일부가 제거되어 내부로 함몰되는 형태.
- 위 형태들은 모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전체적인 미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3. 디자인 개발 경위

- 원고보조참가인은 2018년경 종전 서비스센터에서 사용하던 휴대폰 보호필름 부착장치를 **휴대폰 양산용 보호필름 부착장치로 개선**하기로 함.
- 원고보조참가인 소속 직원 소외 1이 이 사건 개선작업을 담당하면서 여러 협력업체와 협업함.
 - 주식회사 ○○○, 즉 소외 2 회사는: 2018. 3. 9.경 소외 1로부터 종전 보호필름 부착장치의 안착지그 및 롤러 도면을 제공받고, 2018. 4. 6.경부터 이 사건 개선작업에 참여하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반영된 보호필름 수동 부착장치를 개발함.

4. 쟁점 발생 경위

- 소외 1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주요 형태를 구체적으로 착상하고 디자인으로 구체화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 소외 1을 소외 2 회사 소속 직원과 함께 **공동창작자**로 볼 수 있는지,
 - 그렇다면 소외 2 회사의 단독출원이 **공동출원** 규정에 위반되는지가 문제됨.

(3) 법리

쟁점 1.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의 의미

- 구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현행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함.
- 따라서 구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현행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하는: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은 시각을 통한 미감을 일으키는 디자인의 창작행위를 한 사람을 가리킨다.

쟁점 2. 공동창작자의 기본 판단기준

- 구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2항(현행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 말하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경우’에 해당하려면,
“**2명 이상이 시각을 통한 미감을 일으키는 디자인의 창작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한 관계에 있어야 한다.**”
- 따라서 공동창작 여부는 디자인의 미감을 형성하는 창작행위에 관하여 **2명 이상이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함.

쟁점 3. 공동창작자로 볼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정도에 그친 경우에는 공동창작자로 볼 수 없음.

- 디자인 창작에 관한 기본적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
- 디자이너를 일반적으로 관리
- 디자이너의 지시에 따라 디자인 창작을 보조
- 디자인 창작을 후원·위탁

즉, “단순히 디자인 창작에 관한 기본적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거나, 디자이너를 일반적으로 관리하거나, 디자이너의 지시에 따라 디자인 창작을 보조하기만 하거나 또는 디자인 창작을 후원·위탁하는 정도”에 그친 경우에는 공동창작자로 인정되지 않음.

쟁점 4. 공동창작자로 인정될 수 있는 실질적 기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통하여 디자인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 공동창작자로 인정될 수 있음.

-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
- 스케치, 모형 제작, 시안 검토 등을 통하여 그 새로운 착상을 디자인으로 구체화
- 미감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 형태의 제공
-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디자인의 창작을 가능하게 함

대법원은 이를 종합하여,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에 그 디자인의 ‘공동창작자’라고 할 수 있다.”고 판시함.

쟁점 5. 소외 1의 창작행위에 대한 실질적 기여 여부

- 이 사건 등록디자인 중:
 - 몸체부 하단 2종 롤러 형태
 - 입체롤러 2단 단차 형태
 - 몸체부 측면 함몰부 형태는 모두 등록디자인의 전체적인 미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형태임.
- 소외 1은 위와 같은 형태들을:
 - 구체적으로 착상
 - 도면 등을 통하여 디자인으로 구체화
 - 그 디자인이 반영된 시제품을 검증
 - 소외 2 회사 소속 직원에게 여러 차례 디자인 수정·보완을 요청
 - 구체적으로 조언·지도
- 따라서 소외 1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쟁점 6. 공동창작자의 공동출원 의무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소외 2 회사 소속 직원과 소외 1이 공동으로 창작한 디자인에 해당함.
- 따라서 구 디자인보호법 제39조(현행 디자인보호법 제39조)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쟁점 7. 공동출원 규정 위반과 등록무효

- 소외 2 회사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로부터 그 지분을 승계하거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 단독으로 출원하여 등록받음.
-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구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1항 제2호(현행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1항 제1호), 제39조(현행 디자인보호법 제39조)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4) 특허법원(원심법원) 판단

* 첨부된 대법원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원심 판단의 범위로 한정하여 정리함.

- 원심은 피고들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출원이 공동창작자의 공동출원에 관한 구 디자인보호법 제39조에 위배된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무효사유가 인정된다고 봄.

-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관하여 “원심의 이유 실시에는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라고 지적함.
- 다만, “피고들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출원이 공동창작자의 공동출원에 관한 구 디자인보호법 제39조에 위배되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무효사유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함.

(5) 대법원 판단

1. 공동창작자의 판단기준

- 공동창작자가 되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이 시각을 통한 미감을 일으키는 디자인의 창작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한 관계에 있어야 한다.”
- 단순한
 - 기본적 과제와 아이디어 제공
 - 일반적 관리
 - 지시에 따른 보조
 - 후원·위탁정도로는 부족함.
- 반면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스케치, 모형 제작, 시안 검토 등을 통하여 그 새로운 착상을 디자인으로 구체화하거나, 미감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 형태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디자인의 창작을 가능하게 하는 등으로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

에는 공동창작자라고 할 수 있음.

2. 이 사건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 몸체부 하단 2종 롤러 형태
 - 입체롤러 2단 단차 형태
 - 몸체부 측면 함몰부 형태는 모두 전체적인 미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
- 소외 1은 위 형태를:
 - 구체적으로 착상
 - 도면 등을 통하여 디자인으로 구체화
 - 시제품을 검증
 - 여러 차례 디자인 수정·보완을 요청
 - 구체적으로 조언·지도함.
- 따라서 “소외 1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이에 따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소외 2 회사 소속 직원과 소외 1이 공동으로 창작한 디자인에 해당”함.

3. 공동출원 위반 및 무효

- 공동창작 디자인이므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출원하여야 함.
- 그러나 소외 2 회사는 공유자로부터 지분을 승계하거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단독출원함.
-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구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1항 제2호(현행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1항 제1호), 제39조(현행 디자인보호법 제39조)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4. 원심 판단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 원심의 이유 실시에는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무효사유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 원심판결에
 - 디자인 공동창작자 판단 기준 등에 관한 법리오해
 -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
 -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등이 없다고 판단함.

(6) 결론

-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함.
-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들이 부담함.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소외 2 회사 소속 직원과 소외 1의 공동창작 디자인에 해당함.
- 따라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출원하여야 함.
- 그럼에도 소외 2 회사가 공유자로부터 지분을 승계하거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단독출원하여 등록받았으므로 구 디자인보호법 제39조(현행 디자인보호법 제39조)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121조 제1항 제2호 (현행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함.
-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은 있으나 등록무효사유를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유지됨.

(7) 한줄 키워드 요약

디자인의 공동창작자가 되려면 2명 이상이 시각을 통한 미감을 일으키는 디자인의 창작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고, 구체적 착상의 제시·부가·보완, 디자인으로의 구체화, 미감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 형태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 등을 통하여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여야 한다.

(8) 추가 정리 포인트

1. 공동창작 판단의 출발점

- 공동창작 여부는 시각을 통한 미감을 일으키는 디자인의 창작행위에 대한 실질적 기여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
- 단순히 제품 개발이나 업무에 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동창작자가 되는 것은 아님.

2. 단순한 아이디어 제공과 구체적인 창작행위의 구별

- 판례는 다음 행위를 명확히 구별함.

공동창작자로 인정하기 부족한 행위

- 기본적 과제 제공
- 아이디어만 제공
- 일반적 관리
- 지시에 따른 보조
- 후원·위탁

공동창작자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

- 구체적 착상의 제시·부가·보완
- 스케치·모형 제작·시안 검토 등을 통한 디자인의 구체화
- 미감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 형태의 제공
- 구체적인 조언·지도
- 이를 통한 창작행위에 대한 실질적 기여

3. '미감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 형태'의 중요성

-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 몸체부 하단 2중 롤러 형태
 - 입체롤러 2단 단차 형태
 - 몸체부 측면 함몰부 형태가 모두 **등록디자인의 전체적인 미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함.**
- 이후 소외 1이 바로 그러한 형태를 **구체적으로 착상·구체화하고 수정·보완 과정에 관여하였는지**를 판단함.
- 따라서 공동창작자 판단에서는 **등록디자인의 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형태와 그에 대한 각자의 창작행위를 연결하여 판단하여야 함.**

4. 구체적 조언·지도도 창작행위가 될 수 있음

- 공동창작자가 반드시 직접 스케치나 모형을 제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판례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디자인의 창작을 가능하게 하는"** 경우도 창작행위에 대한 실질적 기여의 한 유형으로 명시함.
- 이 사건에서도 소외 1이:
 - 시제품을 검증하고,
 - 여러 차례 디자인 수정·보완을 요청하며,
 - 구체적으로 조언·지도한 사실을 공동창작 판단의 근거로 삼음.

5. 공동창작 인정 이후의 법률관계

- 공동창작이 인정되는 경우:
 -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됨.
 - 구 디자인보호법 제39조 (**현행 디자인보호법 제39조**)에 따라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야 함.
- 공유자로부터 지분을 승계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일부만 출원한 경우:
 - **공동출원 규정 위반**
 - **등록무효사유가 됨.**

6. 사례형 답안에서의 핵심 논리구조

- ① 등록디자인의 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형태 특정
- ② 각 참여자가 그 형태의 창작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 확인
- ③ 단순한 아이디어·관리·보조인지, 구체적 착상·구체화·조언·지도인지 판단
- ④ 창작행위에 대한 실질적 기여 및 실질적 상호 협력 여부 판단
- ⑤ 공동창작자 여부 결정
- ⑥ 공동창작 인정 시 공동출원 여부 판단
- ⑦ 공동출원 규정 위반에 따른 등록무효 여부 판단